

새해 달라지는 세법 내용 해설

1. 실명제시행에 따른 세제보완

가. 소득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액 조정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들어나지 않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도 동시에 경감하여 세부담의 형평증진

| 현 행 | 개 정 |
|-------------------------------|---------------------|
| - 소득세율 | - 세율체계 조정 |
| ~ 400만원 : 5% | ~ 400만원 : 5% |
| 400~ 800만원 : 10% | 400~ 800만원 : 9% |
| 800~1,600만원 : 20% | 800~1,600만원 : 18% |
| 1,600~3,200만원 : 30% | 1,600~3,200만원 : 27% |
| 3,200~6,400만원 : 40% | 3,200~6,400만원 : 36% |
| 6,400만원초과 : 50% | 6,400만원초과 : 45% |
| - 소득공제 | - 소득공제액 인상 |
| ○ 기초공제 : 연60만원 | ○ 연72만원 |
| ○ 근로소득공제 : 연250-600만원 | ○ 연270-620만원 |
| 250만원이하 : 100% | 270만원이하 : 100% |
| 250만원초과 : 30% | 270만원초과 : 30% |
| ○ 장애자공제 : 연48만원 | ○ 연54만원 |
| ○ 교육비공제 : 자녀교육비의 경우에는 2인으로 제한 | ○ 자녀수의 제한삭제 |

※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인상에 따른 면세점 수준

| | (현 행) (개 정) |
|-------------|-------------------|
| ○ 근로자(4인가족) | 연 550만원 → 연 587만원 |
| ○ 사업자(4인가족) | 연 210만원 → 연 227만원 |

나. 법인세율의 인하

금융실명제를 초기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함.

| 현 행 | 개 정 |
|--------------------|--------------------|
| - 법인세율 | - 법인세율을 2%P 인하조정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20%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8%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34%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32% |

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경감함.

| 현 행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92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임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 중소제조업체 ○ 세액감면율 : 20~40% • 금년말로 감면기간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 중소제조업체 ○ 세액감면율 : 20~40% • 금년말로 감면기간 종료 *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20% ○ 감면기간 : 적용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운용 ○ 감면요건 : '94.1.1이후 조감법상 여타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은 적용제외 |

라. 부가가치세의 부담 경감

(1)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 신설

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 행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연간매출액 3,600만원이상) : 부가가치 (=매출액-매입액)에 10% 과세 ○ 과세특례자(연간매출액 3,600만원미만) : 매출액에 2% 과세 -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간의 세율차이로 인해 세부담차이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전환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대상 : 연간 1억5천만원(1과세기간 매출액 7,500만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 ○ 경감세액 :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률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등 용역업의 경우 세부담 경감 예(단위 :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매출액 현 행 개정후 |

| 현 행 | 개 정 |
|-----|---------------------------|
| | ○ 4,000 164 91(▲45% 경감) |
| | ○ 8,000 328 235(▲28% 경감) |
| | ○ 12,000 492 432(▲12% 경감) |
| | <적용시기> '93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 |

(2) 부가가치세 면세점 인상

| 현 행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출액 400만원(납부세액 8만원)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출액 400만원 → 600만원 (세액8만원) (세액12만원) |

마. 기업경영여건 및 재무구조 개선

(1)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완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과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 현 행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대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유보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외에 초과유보소득세 추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보소득 : 배당가능이익의 40% ○ 세율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유보소득 배당가능 이익의 50% 자본금의 10% 중 큰금액 ○ 세율 : 15% |

* '93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함.

(2) 배당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 경영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폭을 확대함.

| 현 행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액의 17/99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1/3 Gros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액의 22/100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이중과세완전조정 |

(3)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손금산입하는 접대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현 행 | 개 정 |
|--|--|
| ○ 중소기업 • 12백만원 • 자본금의 2% • 매출액의 0.02% | • 18백만원 • (좌 동) 합계 • 매출액의 0.03% |
| ○ 일반기업 • 6백만원 • 자본금의 2% • 매출액의 0.01% | • (좌 동) • (좌 동) 합계 • 매출액의 0.015% |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상품판매수익의 인식시기, 건설자금이자와 계산, 장기외화채권·채무의 평가 등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비과세제도 신설

-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자
- 저축한도액 : 월 100만원
- 저축계약기간 : 10년이상으로 하되 5년이상 불입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5년이내 중도해약시 감면세액 추징)
- 저축취급 금융기관 : 한국주택은행
- 통장수 : 1인 1통장

2.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보강

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개선

| 현 행 | 개 정 |
|---|---|
| 〈세액공제배율〉 | - 세액공제율 조정 |
| ○ 경상지출 기술인력개발비 : 5%(중소기업10%) | ○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 |
| ○ 증가지출 기술인력개발비 : 30%(중소기업35%) | ○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 공제) 중 선택 |
| * 증가지출 기술인력개발비 :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적전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분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 ○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 |
| ○ 자체기술개발비 |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 |
| ○ 종업원의 기술훈련비 등 | ○ 연구 및 개발업 추가 |

| 현 행 | 개 정 |
|-----|---|
| | ○ 개발비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관련사업비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업, 부가통신업 등 ○ 「연구 및 개발업」 추가 |

나.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 확대

| 현 행 | 개 정 |
|-----------------------|------------------------------------|
| -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은 4%) | |
| 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
|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 |
| ○ 자체기술개발비 | |
| ○ 연구기관과의 공동 및 위탁기술개발비 |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 |
| ○ 연구원의 인건비 등 | ○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의 설치 및 구입비용 |
| <대상업종> | |
|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동일 | ○ 「연구 및 개발업」 추가 |
| <기술집약산업> | |
| ○ 기계·전자·전기·항공사업 등 | ○ 「무역업」 추가 |
| | ○ 산업시스템 및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추가 |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93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94년말까지 1년 연장함.

| 현 행 | 개 정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
| ○ 기업이 국산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
| <적용대상업종> | |
| ○ 제조업, 중소광업 | |
|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 ○ 국산기계설비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 10%) | |
| <적용시한> | |
| ○ '93말 | ○ '94.12말까지 1년 연장 |

라.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의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 현 행 | 개 정 |
|---|----------------------|
| -중소제조업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 시 15%(의산 5%)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시설에 정보화시설 추가 |

마.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조정

| 현 행 | 개 정 |
|--|--------------------------------|
|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10%(의산3%) 투자세액공제 또는 50%(의산30%) 일시상각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추가 ○ 탈황시설추가 |

바.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를 보완

보증금을 받아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에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를 보완함.

| 현 행 | 개 정 |
|--|---|
|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익(간주임대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 과세대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수입이자 · 배당 등 금융수입)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완 [임대보증금]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토지가액은 제외)] X 정기예금 이자율 (수입이자 · 배당 등 금융수입) |

사. 우리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1) 상호합의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해 외국과세당국

이 세금을 추징하고 이에 대하여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현 행 | 개 정 |
|--|---|
|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회사의 거래금액에 관하여 양국과세 당국간에 상호합의가 되더라도 ○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 하면 국내모회사의 세액을 감액조정해 줄 수 없음. | ○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 하더라도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상호합의 내용에 따라 국내모회사의 세액을 감액조정 · 환급할 수 있음 |

(2) 감액조정제도의 소급적용

| 현 행 | 개 정 |
|---|--|
| -감액조정제도가 신설된 '91년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만 국내모회사의 세액을 환급해 주고 ○ '90년이전 사업연도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 -감액조정제도가 신설된 '91년 이후에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에는 ○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국내모회사의 세액을 감액조정 · 환급 해주기로 함. |

아. 재평가 특례시의 기업공개 시한 연장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공개요건 강화 등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 특례시의 기업공개시한을 연장함.

| 현 행 | 개 정 |
|---|--------------------|
| -구조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재평가한 법인은 ○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업 공개 →5년이내에 미공개시에는 임의 평가로 보아 법인세 과세 | ○ 기업공개시한을 3년 추가 연장 |

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 현 행 | 개 정 |
|--|-------------------|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 비과세한도 : 년 180만원 | ○ 비과세한도 : 년 240만원 |

3.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제고

가. 세액감면제도의 축소

| 현 행 | 개 정 |
|--|------------------------------------|
| -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창업일, 입주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 감면 |
| -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하여 ○ 소득세 100% 면제 | ○ 50% 감면 |

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조세지원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산업별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함.

| 현 행 | 개 정 |
|-------------------|----------------|
| - 의료업 | |
| ○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10%) | |
| ○ 의료시설투자준비금 손금산업 | ○ 의료시설투자준비금 폐지 |

다. 증자소득공제제도 축소

조세감면규모에 비하여 실질적인 증자승인효과가 미미한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함.

| 현 행 | 개 정 |
|---|---|
| - 영리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금액(법인 출자분은 제외)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 | |
| 〈공제기간〉 ○ 제조업 : 3년 ○ 여타업종 : 2년 | 〈대상업종 및 공제기간〉 ○ 제조업, 부가통신업, 컴퓨터 운용업 및 엔지니어링 용역업에 한해 2년 |
| 〈공제율〉 ○ 증자금액의 10%(증소기업 12%) | ○ 2% point인하(일반 8% 중소기업은 10%) |
| 〈증자기한〉 ○ '93.12.31까지 증자분 | 〈증자기한〉 ○ '95.12.31(2년연장)까지 증자분 |

라. 공공법인 세율 상향조정

공공법인의 낮은 세율을 일반법인의 낮은 세

율(18%)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현 행 | 개 정 |
|-------------------------------|----------------------|
| - 일반공공법인 ○ 과표 3억원 이하 : 17% | ○ 과표 3억원 이하 : 18% |
| ○ 과표 3억원 초과 : 25% | ○ 과표 3억원 초과 : (현행유지) |

마.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축소

| 현 행 | 개 정 |
|---|---|
| - 국가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100% 감면 ○ 5년이상 보유 : 70%(채권보상분 100%) | - 양도세 감면율을 30~75%로 축소 ○ 5년이상 : 50%(채권보상분 75%) |
| ○ 5년미만 보유 : 50%(채권보상분 80%)감면 | ○ 5년미만 : 30%(채권보상분 45%) 감면 |
| -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등 토지 개발기관에 양도시 50%감면 | - 감면폐지 |

바. 주택용지에 대한 감면율 하향조정

| 현 행 | 개 정 |
|---|--|
|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나 기업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 - 감면율 축소 ○ 5년이상보유 : 50% 감면 ○ 5년미만보유 : 30% 감면 |
| - 기숙사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세 전액 면제 | |

사.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과세이연제도로 전환

| 현 행 | 개 정 |
|---|---|
| ○ 대도시내공장 지방 이전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 100% 감면 | - 법인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하고 양도세만 감면하되, ○ 양도세 감면은 50% 감면과 ○ 과세이연중 기업이 선택 하여 적용 |
| ○ 수도권내 법인본사를 수도권외 이전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 100% 감면 | *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개정규정은 '96.1.1 부터 시행 |
| ○ 중소제조기업의 업종 전환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 100% 감면 | * 과세이연제도 : 토지나 건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한 과세 |
| ○ 5년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 양도세 100% 감면 | |

| 현 행 | 개 정 |
|----------------------------------|---|
| O 10년이상 경영목장 이전 : 양도세 100% 감면 | 를 하지 아니하되 향후 처분 할때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세 |

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제 강화

| 현 행 | 개 정 |
|---|----------------------------------|
| - 개인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세액기준으로 연간 3억원까지 감면(초과분은 과세) | - 감면종합한도액을 연간 1억원 으로 하향조정 |
| - 법인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각 사업연도별로 양도세산출세액의 70%까지 감면(초과분은 과세) | - 감면종합한도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의 5%로 하향조정 |

4. 소비과세제도의 개선

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범위 및 세율조정

(1) 일부 품목에 대한 과세범위 및 세율조정
그동안의 소득수준향상·소비형태의 변화·품
목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세
율을 조정

| 현 행 | 개 정 |
|--|---|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O 전기세탁기 : 20% * 6kg이하 소형만 과세 O VTR : 25% O 짚 차 : 10% O 볼링용품 : 60% 〈신 설〉 〈신 설〉 | O 전기세탁기 : 10% * 대·소형 구분없이 과세 O VTR : 20% O 짚차 : 배기량에 따라 10~20% O 볼링용품 : 25% O 액체연료사용잔다깎기 : 15% O 윈드서핑용구, 헬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는 착륙장치 포함) : 25% |

(2) 석유류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및 세율 조정

에너지 소비억제 및 유종간 과세형평을 위
하여 석유류 전반에 대해 과세체계 조정.

| 현 행 | 개 정 |
|--------------------|-------------------|
| O 휘발유 : 100%(109%) | 150% ————— 목적세 전환 |
| O 경유 : 10%(9%) | 20% ————— |
| O 등유 : 비과세 | 10% |

| 현 행 | 개 정 |
|-----------------|-----|
| O LPG : 10%(8%) | 10% |
| O LNG : 비과세 | 10% |
| * ()내는 현행 탄력세율 | |

나.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등

(1) 관세가 무세인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 현 행 | 개 정 |
|---|---|
|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수입 물품은 수입단계에서 부가가 치세 면세 |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라 하더 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93년 개정시 과세전환 대상) |
| O 수입물품은 면세되고 국내생산 품은 과세됨에 따라 수입 물품을 우대하는 결과 | O 백신, 헬리콥터, 골동품 등 54개 세목(관세율표 기준) |
| | O 시행시기 : '94.7.1 |

5.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교통세)신 설

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소세를 한시적인
목적세로 전환

| 현 행 | 개 정 |
|---------------------------|--|
| -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 과세 | - 10년 한시 목적세인 '교통세' 신설 |
| O 휘발유 : 100%(109%) | O 휘발유 : 150% |
| O 경유 : 10%(9%) | O 경유 : 20% |
| * ()는 탄력세율 | * 현재와 같이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운영 → 교통세 전액을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건설 등에 사용 |

6. 납세편의 제고 및 권익증진

가. 납세절차 간소화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 개선

한계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사업자(전기매출액

7,500만원이하)는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신고·납부토록 간소화 하고 직전기 납부세액 1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만하도록 함.

(2) 세금계산서 제도개선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4매 발행 2매 교부』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매 발행 2매교부』로 축소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완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허용

(4)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소득세 납부방식 개선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던 근로소득세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5)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 제출의무제도의 개선

종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계획서, 투자완료 보고서 및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함.

(6)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시 반입신고기한 연장

수출물품제조자 등이 특별소비세 납부를 유보한 상태에서 물품반출시 반입자가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토록 함.

나. 납세자의 권리증진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는 그 법인의 대주주와 그 친족·사용인 등 과점주주 모두가 무한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앞으로는 과점주주중 대주주, 사실상 지배주주, 임원인 주주로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

사업의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현재는 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로서 양도후에 고지되는 국세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앞으로는 양도전에 고지된 세금에 대해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3) 압류이후에 고지된 국세의 우선권 조정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후에 추가로 국세의 고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고지된 국세를 저당권보다 우선시켰으나, 앞으로는 저당권을 우선시키도록 함.

(4) 부동산의 압류효력 제한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던 것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고지된 체납세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5) 우편에 의한 신고 등의 경우 발신주의 확대

국세불복청구기간내에 우편으로 불복청구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봄.

(6) 납세담보 평가의 현실화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평가토록 개선